



□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기준

1. 배정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차량정보 및 거주정보를 기초한 점수를 반영하여 배정
2. 배정심의대상 :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자
 - * 수시배정 : 정기신청 기간 이후 잔여구획 발생 등에 따라 수시 배정(대기 순서에 따라 배정)
3. 배정우선순위 선정(우선순위 중 배점표 점수에 따라 배정)
 - 제1순위 : 배정(신청)일 현재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을 대상으로 배정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동점 시 ①장애등급 높은 순 ②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
 - 제2순위 : 1순위 우선 배정 후 관내 거주자 중에서 배정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 (동점 시 ①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 ②자동차 배기량이 낮은 순)
 - 제3순위 : 2순위를 우선 배정 후 잔여구획을 비거주자(관내 사업자 및 사업장 근무자)의 상위점수(해당차량 합계 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동점 시 ①자동차 배기량 낮은 순 ②관내 사업개시연월이 빠른 순)

<표 1>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

선정 항목		점수	비고
관내 전입일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연수 = 거주기간 × 1.0 - 거주월수 = 거주연수 × 0.09 ※ 최대 적용 값 : 20점미만 적용 	20	주민등록 등본 참조 (마포구 전입기간)
차종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차 ② 소형차량(1000cc 이상 ~ 1500cc 미만) 	5 2	자동차등록증 참조
특별가산점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유공자 상이자 및 장애인(1~3급), 고엽제 휴유증환자로 등록된 차량 단, 시각장애인(1~4급) 기타 장애인(4급 ~ 6급) 차량 	10 5	입증 서류 첨부 시
무대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전자태그 부착) 10년 이상 장기사용차량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65세 이상 고령자 차량 1가구(또는 사업장) 다차량중 4번째 차량 1가구(또는 사업장) 3차량중 3번째 차량 1가구(또는 사업장) 2차량중 2번째 차량 	10 5 5 -30 -20 -10	입증 서류 첨부 시 자동차등록증 참조 자동차등록증 참조 입증서류 첨부 시
기사용(수혜)자	배정 1회마다(누적 적용 횟수 4회)	-3	예) 1회배정시 3점 2회연속배정시 6점
탈락횟수	매회 탈락 시(누적 적용 횟수 4회)	3	예) 1회탈락시 3점 2회연속탈락시 6점기준
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장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사업개시 연수 = 기간 × 1.0 - 관내 사업개시 월수 = 월수 × 0.09 	20	사업자등록증 참조 비거주자(3순위) 별도 적용

비고

1.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선정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선정
 2. 장애인 가점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가점부여
 3. 위 기준 외에 「심의위원회(마포구시설관리공단)*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기타 배정기준 조건에서 정하는 사항



4.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①관내 거주자 ② 관내에 사업장(근무처)이 있어 주간(또는 전일)에 빈 주차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 우선배정제외대상 : ①관련 법령상 차고지(주차장) 확보의 무가 있는 차량(영업용 차량(렌터카 포함),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②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③동일 차량을 2개 구간(전용구획 포함) 이상에 중복배정하지 않음(중복 신청에 의한 배정 시 배정전후를 불문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배정취소 등 임의 처리)
 - *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 * 우선배정제외대상이라도 주차여유구획 발생시 ①③의 경우 배정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가능(민원 발생 시 배정취소)

5. 배정(지정) 원칙

- 신청 시 반드시 차량소유주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가 직계 또는 형제의 차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확인서)
- 전용주차구획 사용차량의 소유자가 일반구획(간)에 이용신청하는 경우 상근자로 간주
- 거주자가 타 지역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차량으로 배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직 증명서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
- 주차 장소는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차구간(구획) 지정기간은 3개월(분기) 단위이며 주차요금도 지정기간 요금을 선납 하여야 함.
- 주차요금을 납기 내 미납한 경우에는 지정취소하고 취소 분은 후 순위자(또는 대기자)에 배정함.
- 개인운송사업자 차량(개인택시, 2.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이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
- 공사 등으로 인해 구획선이 삭선되거나 기타 이용불가 사유 발생시에는 대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해당구간 지정일이 늦은자 ②지정순위가 늦은 자 순을 지정(배정) 중지 또는 취소함.
 - *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구획이 삭선 되는 경우 수시로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
-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차량변경시 주차권을 교체하여야 하며 종도 이용 중지 시에는 주차권 반환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환불 처리함.

6. 배정(지정) 취소(제한)

- 주차구획 배정 후 15일(전용주차구획은 30일)이 경과하여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취소
- 배정(지정) 원칙,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불여 전대한 경우
- 신청서 허위(착오)기재, 신청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배정 전, 후를 불문하고 배정(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7. 배정자 사용조건

- 주차권 미부착시 단속(견인) 대상이 됨.
- 지정된 주차구획 내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금지 및 청결유지
-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차량 훼손 및 도난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아님(주차구획 관리주체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둔지 아니함)
- 지정된 주차구획 안에서 지정차량, 지정주차기간,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 시간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견인)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이 유의사항(배정·사용 조건 등)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 **배정확인은 별도의 공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하며 배정이 되신 후에는 정해진 기간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에는 배정 제한 조치 됨.**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1.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시간	전 일 (24시간)	주 간 (09:00~18:00)	야 간 (19:00~의일08:00)	비 고
주차요금 (월 기준)	거주자	4만원	3만원	일반구간 적용
	비거주자	5만원	3만5천원	일반구간 적용
	시설	5만원	3만6천원	비거주자 구분 없음

2. 시설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제 준용)

구 분	전 일	주 간	야 간
운영시간	24시간	09:00 ~ 18:00	19:00 ~ 다음날 08:00
주차요금(월)	5만원	3만 6천원	2만 4천원

3. 노상주차장 야간시간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구 分	주 간(평일)	야 간(거주자 운영)
운영시간	09:00 ~ 19:00	20:00 ~ 다음날 08:00
주차요금(월)	급지별 시간·정기요금 별도 적용	2만 6천원
비 고	평일 주간, 노상주차장 운영	토·일·공휴일은 24시간 제공(사용)

※ 주차요금 할인 :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